

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[2013. 6. 20] 조례 제3096호

일부개정 2015. 12. 24 조례 제3297호
일부개정 2018. 1. 3 조례 제3446호
일부개정 2025. 5. 13 조례 제4048호
(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
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연천군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장학관의 명칭은 연천군 장학관(이하 “장학관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② 장학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30길 27(신설동)에 둔다.

제3조(기능) 장학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입사생 학업 지원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
2. 입사생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
3. 그 밖에 입사생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

제4조(운영) ① 장학관은 연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, 장학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「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하여 위탁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입사생의 자격) ① 장학관 입사대상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제5호, 제6호는

제외한다)에 따른 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2. 24, 2018. 1. 3>

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장학관 운영사항 심의) ① 군수는 장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「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향토장학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장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장학관 입사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사항
2.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지원 및 재정운영) ①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군수는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입사생 부담금) 군수는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 제공 등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관 시설 및 운영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위·수탁재산을 장학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장학관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보조금 요구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수탁자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승인)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
2.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입사생 수칙 등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의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

제11조(감독) ① 군수는 장학관 위탁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위탁의 취소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9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
3. 수탁자가 장학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4.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5. 그 밖에 공익상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제13조(준용규정) 장학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,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연천군 물품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25. 5. 13>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부칙 〈2015. 12. 24 조례 제329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8. 1. 3 조례 제3446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5. 5. 13 조례 제4048호,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

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